

제2686호
2019. 10. 1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규 칙

제7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 2

● 공 고

제2019-76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상차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규	칙
---	---

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은 이에 폐지한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3호

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규칙」의 상위 근거 법령인 「조세범처벌법」제16조 및 舊「지방세법」제67조의 조문삭제로 규칙의 존치 근거가 상실되었고,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폐지
(제정일 :1988.5.1.)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60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이용접근성을 높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고하고 박물관 운영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표 개정(별표5)
 - 주차장 이용요금을 지역 실정에 맞춰 감면 운영하는 내용과 종일요금을 신설하여 박물관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익을 높이고자 함
- 박물관 시설 사용범위 확대(별표1)
 - 문화 행사를 위한 사용 수요 증대에 따라 시설 사용 범위를 늘리고 박물관 운영의 부담을 저하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홍인동, 충무아트센터), 문의전화 : 3396-4622, FAX: 3396-8621, 전자우편 : hycor9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1. 주차장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
 - 가. 일일 시간 주차 : 5분당 400원을 기본료로 징수하고, 30분 초과 시 매10분 당 1,000원으로 징수한다.
 - 나. 종일요금은 일일 20,000원으로 한다.
 - 다. 월 정기주차 요금은 월 250,000원으로 한다.
 - 라.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제19조 관련)

연번	시설명	면적	1회 이용시간	금액	비고
1	교육 강당 (지하1층)	210.23㎡	반일	250,000원	
			전일	500,000원	
2	기획 전시실 (지하2층)	310.63㎡	전일	500,000원	
3	소강당 (지하2층)	112.87㎡	반일	170,000원	
			전일	250,000원	
4	콘솔레이션홀 (지하3층)	966.45㎡	전일	2,500,000원	
5	하늘광장 (지하3층)	934.65㎡	전일	2,000,000원	

-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00~18:00), 반일시간(09:00~13:00 / 14:00~18:00 선택)임
 2.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이용으로 적용함.
 3. 토·일·공휴일 및 야간 시간(19:00~22:00) 대관 시 대관료에 30%를 할증함.
 4.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